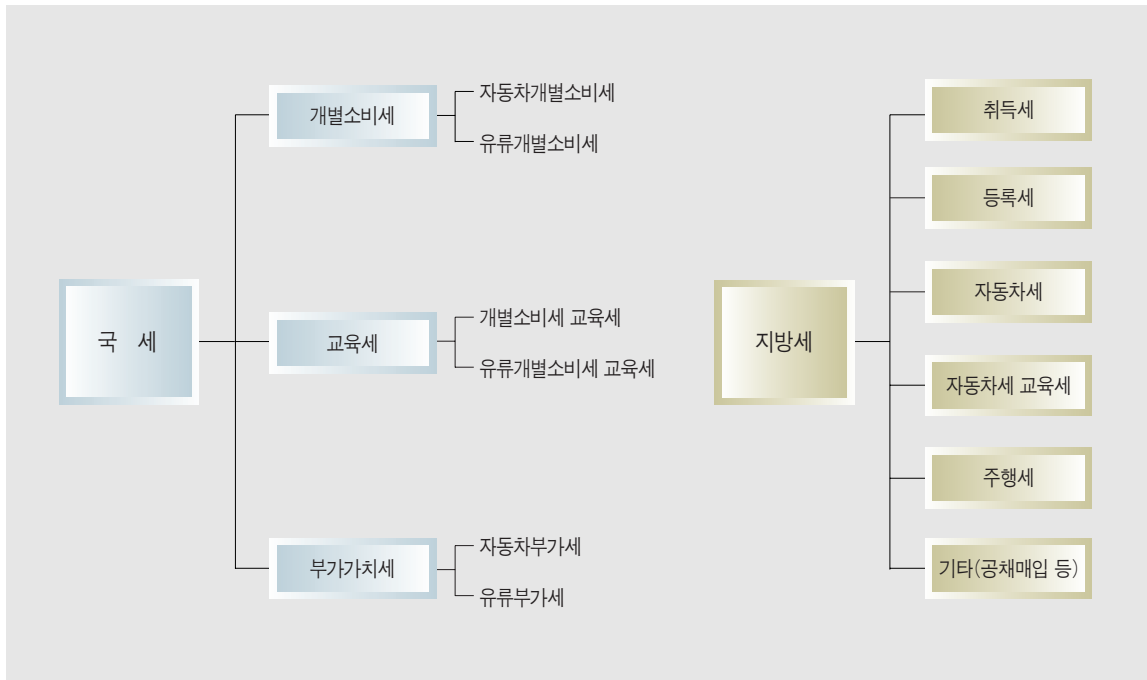


세 제



● 단계별 자동차 관련세제

구 분	세 명	과 세 근 거	비 고
구 매 과 정	개 별 소 비 세 개 별 소 비 세 교 육 세 부 가 가 치 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승용차만 해당 · 개별소비세액의 30% · 과세표준액의 10% (전차종)
등 록 과 정	취 득 세 등 록 세 공 채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32조의 2 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판매가 - 부가세) · 신규등록시 5% (등록종류에 따라 차이) · 차종, 지역에 따라 차이
보 유 과 정	자 동 차 세 자 동 차 세 교 육 세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지방세법 제260조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차이 (cc당 부과) · 자동차세액의 30% (승용자가용만 부과)
운 행 과 정	유 류 개 별 소 비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주 행 세 유 류 부 가 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종에 따라 차이 · 유류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 교통·에너지·환경세 액의 36% (휘발유·경유) · 공급가의 10%

● 과세표준 및 세율

(2010년 4월 기준)

구분	과세대상	세율(세액)			비고
개별소비세	- 2,000cc 이하/2륜자전거(125cc 초과)	공장도 가격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경승용차(1,000cc 이하) 제외 • 교육세부과 → 개별소비세의 30%(교육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 부과 →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109조): 최대 100만원('09. 7. 1 ~ '12. 12. 31)
	- 2,000cc 초과/캠핑용자전거	공장도 가격의 10%			
취득세	- 일반자동차	(판매가 - 부가세)의 2%			(지방세법 제112조) • '99.1.1일부터 1가구2차량 중과세 폐지 • '99.1.1일부터 농어촌개별세 폐지 • '04.1.1일부터 비영업용 경형승용차 면제(제268조의 2) • '09.1.1일부터 경형승용차 1% → 0%(면제)(제268조의 2) • 하이브리드차 최대 40만원 면제('09. 7. 1 ~ '10. 12. 31) ※ 판매가=공장도가+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등록세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저당권 설정등록 기타등록	5% 0.2% 7,500원 ①	3% 0.2% 7,500원 ②	2% 0.2% 7,500원 ③	(지방세법 제132조의 2) • '99.1.1일부터 등록세교육세 폐지 • '99.1.1일부터 1가구2차량 중과세 폐지 • '04.1.1일부터 비영업용 경형승용차 면제 • '05년부터 7~10인승 승용차등록세 3년에 걸쳐 인상 (3% → 5%) : '05년 33%, '06년 66%, '07년 100% • '09.1.1일부터 경형승용차 1% → 0%(면제)(제268조의 2) • 하이브리드차 최대 100만원 면제('09. 7. 1 ~ '10. 12. 31) ① 비영업용 승용차 ② 기타자동차 (비영업용) ③ 기타자동차 (영업용)
자동차세	승용차	2,500cc 초과	220원 / cc	24원 / cc	(지방세법 제196조의 5) •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조례에 의하여 50% 초과 적용 가능 • 교육세부과(승용차기용) → 자동차세액의 30% • '01.7.1일부터 비영업용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 경감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 • '08년부터 7~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3년에 걸쳐 인상 재연장 ('07. 12월 시·군세감면조례개정) : '08년 승용차 세액 대비 67%, '09년 84%, '10년 100% 단, 전방조종형은 소형승합차 기준(65,000원/년) 적용 ('08. 5월 표준조례안 발표, '10. 1월 재개정) • '05.7.1일부터 소형차 자동차세 기준변경 : 1,500cc → 1,600cc
		2,500cc 이하	220원 / cc	19원 / cc	
	2,000cc 이하	200원 / cc	19원 / cc		
	1,600cc 이하	140원 / cc	18원 / cc		
	1,000cc 이하	100원 / cc	18원 / cc		
	800cc 이하	80원 / cc	18원 / cc		
	기타 승용	100,000원/년	20,000원/년		
	승합차	고속버스	-	100,000원	• 대형버스 : 승차정원 40인 초과 • 일반버스 : 시내, 시외버스, 비영업용버스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화물차	10톤 이하	157,500원	45,000원	• 10톤 초과시 비영업용 : 10톤이하세액+10톤초과시마다 3만원 영업용 : 10톤이하세액+10톤초과시마다 1만원 • 승용겸 화물차의 자동차세 : 소형화물차 기준 적용('10년, 시군세감면조례 반영 예정)
8톤 이하		130,500원	36,000원		
5톤 이하		79,500원	22,500원		
4톤 이하		63,000원	18,000원		
3톤 이하		48,000원	13,500원		
2톤 이하		34,500원	9,600원		
	1톤 이하	28,500원	6,600원		
	기타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36,000원	• 대형특수자동차 : 적재량4톤 초과, 또는 그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 ① 비영업용 ② 영업용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13,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18,000원 ①	3,300원 ②	

구 분	과세대상	세 율 (세액)	비 고								
유류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 경유 - LPG	<table border="0"> <tr> <td>법정세율</td> <td>실행세율</td> </tr> <tr> <td>- 475원/ℓ</td> <td>- 529원/ℓ</td> </tr> <tr> <td>- 340원/ℓ</td> <td>- 375원/ℓ</td> </tr> <tr> <td>- 252원/kg (147원/ℓ)</td> <td>- 275원/kg (160.7원/ℓ)</td> </tr> </table>	법정세율	실행세율	- 475원/ℓ	- 529원/ℓ	- 340원/ℓ	- 375원/ℓ	- 252원/kg (147원/ℓ)	- 275원/kg (160.7원/ℓ)	(개별소비세법 제1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 교육세 부과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 '01.7월부터 LPG에 교육세 부과 : 개별소비세액의 15% • 부가가치세부과 →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주행세+교육세)의 10%
	법정세율	실행세율									
- 475원/ℓ	- 529원/ℓ										
- 340원/ℓ	- 375원/ℓ										
- 252원/kg (147원/ℓ)	- 275원/kg (160.7원/ℓ)										
2차 에너지세제 개편('05. 7월) • '07. 7월 최종 가격 목표 변경(휘발유 : 경유 : LPG) - 100:75:60 (1차) → 100:85:50 (2차) - 1,365원/ℓ:1,025원/ℓ:686원/ℓ('05. 7월) → 1,370원/ℓ:1,098원/ℓ:686원/ℓ('06. 7월) → 1,370원/ℓ:1,165원/ℓ:686원/ℓ('07. 7월)		※ '02.7월부터 주행세 및 LPG판매 부과금 인상폭만큼 시행령으로 인하 시행 중 (실행세율 적용) ※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 기한 3년 연장 ('09. 12 → '12. 12) ※ 1,000cc 미만 경차 사용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 연간한도 10만원 ('08. 5 ~ '10. 12) ※ LPG(부탄) 판매부과금 : 62.28원/kg('10. 3월)									
주행세	- 휘발유, 경유	- 법정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실행세율 : 26%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 '00.1.1일 신설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보전을 위해 도입)								
기 타	인지도 / 증지대 / 번호판대 / 각종검사비 ※ '01.1.1일부터 자동차 면허세 폐지										

※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의 실행세율은 법정세율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가능

※ 법령변경 : 교통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07. 1), 특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법('08. 1)

● 하이브리드차 보급 지원정책

주요 내용	관련 법규
•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100만원(최대), 교육세 30만원(최대) - 기간 : '12. 12. 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09. 7월 시행)
• 취득세, 등록세 감면 - 취득세 40만원(최대), 등록세 100만원(최대) - 기간 : '10. 12. 31까지	• 지방세법 제268조의 3('09. 7월 시행)
•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200만원 면제 - 기간 : '12. 12. 31까지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비고란 제2호 카목) ('09. 7월 시행)
• 지역개발채권 매입액 150만원 면제 - 기간 : '09. 10월 부터 소급 적용	• 시·도별 조례('09. 9. 15일 발표)

● 관 세

구 분	과 세 대 상	세 율 (%)	비 고
HS 8701	트랙터	8	(관세법)
HS 8702	승합자동차	10	• 덤프트럭 (HS8704.10) 0%
HS 8703	승용자동차 (스테이션웨곤 및 경주용 자동차 포함)	8	• 특수용도차량 (예:구난차, 기중기차, 소방차,
HS 8704	화물자동차	1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도로청소차, 살포차,
HS 8705	특수용도차량	8	이동공작차, 이동방송차)
HS 8706~8708	부품 (새시, 차체, 부분품)	8	• CIF가격 기준

참고 자료

● 공 채

1. 도시철도채권

(단위 : 천원)

구 분		신 규 등 록		이 전 등 록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승용차	1,000cc 미만	-	-	-	-
	1,000cc 이상	9%	3%	6%	3%
	1,600cc 이상	12%			
	2,000cc 이상	20%			
다목적형	5%	2%	2%		
승합차	7인 이상 승용차 및 11인승 이상	390	130	130	45
	16인승 이상	650	215	215	70
	26인승 이상	1,300	435	435	145
화물차	2.5톤 미만	195	65	65	20
	2.5톤 이상	390	130	130	45
	4.6톤 이상	650	215	215	70

2. 지역개발공채

(단위 : %)

구 분		신 규 등 록		이 전 등 록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승용차	1,000cc 미만	-	-	-	-
	1,000cc 이상	6	2	3	1
	1,600cc 이상	8		4	
	2,000cc 이상	12		6	
	다목적형	6		3	
승합차	11인승 이상	3	1	1.5	0.5
	16인승 이상				
	26인승 이상				
화물차	2.5톤 미만	3	1	1.5	0.5
	2.5톤 이상				
	4.6톤 이상				

- 도시철도법시행령 및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 800cc 미만 경차 도시철도채권 면제('03.4)
- 경차규격 확대 (800cc → 1,000cc)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면제 범위 확대('07.10)
- 지프형'을 '다목적형'으로 변경('07.10)
- 과세표준 : 등록세 과세표준액(판매가-부가세)
- 소형차 기준조정 : 1,500cc → 1,600cc(도시철도법 '04.7, 지역개발공채 '06.1)
- 하이브리드차 채권매입금액 최대 200만원 면제 시행('09.7)

● 기 타

구 분	내 용	비 고
교통유발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 부담금산출액 : 시설물 각종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1㎡당 350원)×교통유발계수(0.24 - 5.46) (연간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9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소유 자동차를 포함).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부과대상지역 : 전국 • 부과시기 : 반기별(3월, 9월) • 산정기준 = 기준부과금액(20,250원)×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 • 감면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특별법상 저공해 자동차 : 5년간 면제 - EURO-4 적용 경유차 : 3년간 50% 면제('08. 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동시행령 제4조, 제8조

● 자동차관련 세제 변천과정

1.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가. 자동차

구 분	'77.7	'79.1	'82.1	'89.1	'94.1	'96.1	'01.11~'02.8	'03.7	'04.3~'05.12	'06.1~'07.12	'08.1	'08.12.19~'6.30	'09.7~				
1,500cc 이하, 2륜 자동차	15%	←	←	1,500cc 이하, (800cc 이하 제외) 4륜구동 Jeep, 2륜 자동차	10%	1,500cc 이하, 2륜 자동차	10%	←	7%	5%	5%	4%	5%	←	(1,000cc 이하 면제)	3.5%	5%
1,500~2,000cc, 4륜구동 Jeep	20%	←	←	1,500~2,000cc	15%	1,500~2,000cc	15%	←	10%	7.5%	5%	4%	5%	←		3.5%	5%
2,000cc 초과	40%	①←	←	2,000cc 초과, 캠핑용 자동차	25%	2,000cc 초과, 캠핑용 자동차	25%	20%	14%	10%	10%	8%	10%	←		7%	10%
		6기통 이상, 2,000cc 이하	30%			단, 2,000cc 초과Jeep	20%	←									

- ① 캠핑용 자동차 포함.
- 잠정세율 적용
 ('80.11~'83.6) : 1,500cc 이하 10.5%, 1,500~2,000cc 14%
 ('88.3~'88.12) : 1,500cc 이하 10.5%, 1,500~2,000cc 16%, 6기통(~2,000cc) 24%, 2,000cc 초과 28%
 ('98.7~'01.11) : 1,500cc 이하 7%, 1,500~2,000cc 10.5%, 2,000cc 초과 14%
 ('01.11~'02.8) : 1,500cc 이하 5%, 1,500~2,000cc 7.5%, 2,000cc 초과 10%
 ('04.3.24~'05.12.31) : 2,000cc 이하 4%, 2,000cc 초과 8%
 ('08.12.19~'09.6.30) : 2,000cc 이하 3.5%, 2,000cc 초과 7%
- 개별소비세 개편('03.7) : 3단계 → 2단계 간소화(2,000cc 기준)
- 경차규격 확대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 800cc 이하 → 1,000cc 이하('08.1)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부면제 시행('09.7~'12.12) : 최대 100만원 면제

나. 유 류

구 분	'83.1	'94.1	'96.1	'97.1	'98.1.9	'98.5.3	'98.9.17	'99.5.6	'00.1	'00.3	'00.5	'01.7
휘발유	100%	150%	345원/ℓ	414원/ℓ	455원/ℓ	591원/ℓ	691원/ℓ	651원/ℓ	630원/ℓ	600원/ℓ	630원/ℓ	588원/ℓ
경 유	10%	20%	40원/ℓ	48원/ℓ	85원/ℓ	110원/ℓ	160원/ℓ	←	155원/ℓ	137원/ℓ	155원/ℓ	185원/ℓ
L P G	10%	←	18원/kg	←	40원/kg	←	←	←	40원/kg	40원/kg	←	114원/kg

구 분	'02.1	'02.7	'03.7	'04.3	'04.7	'05.7	'06.7	'07.7	'08.3	'08.10	'09.1	'09.5.21
휘발유	←	586원/ℓ	572원/ℓ	559원/ℓ	545원/ℓ	535원/ℓ	526원/ℓ	505원/ℓ	472원/ℓ	462원/ℓ	514원/ℓ	529원/ℓ
경 유	191원/ℓ	232원/ℓ	261원/ℓ	255원/ℓ	287원/ℓ	323원/ℓ	351원/ℓ	358원/ℓ	335원/ℓ	328원/ℓ	364원/ℓ	375원/ℓ
L P G	←	203원/kg	267원/kg	297원/kg	382원/kg	306원/kg	←	275원/kg	252원/kg	←	275원/kg	←

- 휘발유 및 경유는 법정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교육세 신설 부과('96.7.1), 수송용 LPG 개별세교육세 신설 부과('01.7.1)

2.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

구 분	'77.1	'89.1	'95.1 ~ 현재
일반자동차	차가(세금계산서 내역)의 2%	←	←
고급 승용차	① 차가(세금계산서 내역)의 15%	②←	③

- 중고차 : 기준시가(최초의 취득가격) × 당해차량의 경과년수에 따른 잔가율 = 취득가액
 ① 시가표준액 300만원이 초과되는 축간거리 260cm 이상의 외국산 승용차
 ② 과세시가 표준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③ 사제('95.1)
- 농어촌특별세('94.7~'98.12) : 취득세액의 10%
- 경상용차의 취득세율 인하 : 2% → 1%('08.1) → 0%(면제,'09.1)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일부 면제('09.7) : 최대 40만원

나. 승합자동차

(단위 : 백원)

구 분	'61. 10		'67. 11		'70. 4		'77. 1			'91. 1 ~ 현재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61인 이상	241	146			385.6	233.6	고속버스	-	820	-	1,000
60인 이하	190	117			304.0	187.2	대형전세	-	500	-	700
50인 이하	165	103		←	264.0	164.8	소형전세	-	410	-	500
40인 이하	137	86			219.2	137.6	대형일반	770	350	1,150	420
30인 이하	114	71			182.4	113.6	소형일반	440	210	650	250
17인 이상	↑	↑	160	-	250.0	-	· 대형 : 승차정원 41인 이상				
16인 이하	↑	↑	125	-	200.0	-	· 일반 : 시내버스, 시외버스, 비영업용버스				

- '74~'79.3월 : 서울, 부산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위 세액의 50% 부과
- 상기세액은 연간세액으로 함.

다.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단위 : 백원)

구 분	'61. 10		'67. 11		'70. 4		'74. 1		'77. 1		'79. 4		'91. 1 ~ 현재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화 물 자 동 차	1,000kg 이하	39	19		62.4	30.4	190	44					285	66	
	2,000kg 이하	48	27		76.8	43.2	230	64					345	96	
	3,000kg 이하	67	37		107.2	59.2	320	90					480	135	
	4,000kg 이하	88	50		140.8	80.0	420	120					630	180	
	5,000kg 이하	110	62		176.0	99.2	530	150		←		←	795	225	
	8,000kg 이하	182	101		291.2	161.6	870	240					1,305	360	
	10,000kg 이하	204	112		326.4	179.2	1,050	300					1,575	450	
	10,000kg 초과	↑	↑			↑	↑	↑	↑	1,260	360			①	②
특 수 자 동 차	적재적량 4톤 초과 또는 상당배기량	-	-	182	100	291.2	160.0	349.6	160.0	454.5	160.0	1,050	240	1,575	360
	적재적량 4톤 이하 또는 상당배기량	-	-	67	37	107.2	59.2	128.0	59.2	166.4	59.2	390	90	585	135

- '74~'79.3월 : 서울, 부산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위 세액의 50% 부과
- 상기세액은 연간세액임.
- 적재적량 10톤 초과시
 - ① 자가용 : 10톤이하 세액 + 10톤초과시마다 3만원
 - ② 영업용 : 10톤이하 세액 + 10톤초과시마다 1만원

참고 자료

5. 공채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시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가. 신규등록

(단위 : 천원)

구 분		적용대상지역	'85		'87		'90. 9(10)		'94.1		'96.1		'98.1		'04.7		'06.1		'07.10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승용차	외산차	수입차(2,000cc이상)	전 지역	①2,990	995	←	←	←	←	②2,990	③995	②2,990	③995	-	-	-	-	-	-	-	-													
	고급차	2,000cc 이상	도시철도채권지역	1,300	435	10%	3%	20%	3%			20%	3%																					
			지역개발공채지역	↑	↑	1,300	435	1,300	435			12%	2%									←	←	←										
	일반차	1,500cc 이상	도시철도채권지역	910	305	8%	2%	12%	3%	←	←	12%	3%	←	←	←	←	←	←	←	←													
			지역개발공채지역	↑	↑	910	305	910	305			8%	2%									←	←	←										
		도시철도채권지역	325	110	6%	3%	9%	3%	9%			3%	←									←	←											
		지역개발공채지역	↑	↑	325	110	325	110	6%			2%	←									←	←											
	다목적형	4륜 구동	도시철도채권지역	260	85	4%	3%	4%	3%	←	←	4%	3%	←	←	←	←	←	←	←	←													
			지역개발공채지역	↑	↑	260	85	260	85			3%	2%									←	←	←										
	버스	대형	25인승 이상	전 지역	1,300	435	←	←	←	←	←	←	←	←	←	←	←	←	←	←	←	←												
중형		16~25인승	전 지역	650	215	←																	←	←	←	←	←	←	←	←	←	←	←	←
소형		7~15인승	전 지역	390	130	←																	←	←	←	←	←	←	←	←	←	←	←	←
화물	대형	4.6톤 이상	전 지역	650	215	←	←	←	←	←	←	←	←	←	←	←	←	←	←	←	←													
	중형	2.5~4.6톤	전 지역	390	130																	←	←	←	←	←	←	←	←	←	←	←	←	←
	소형	2.5톤 미만	전 지역	195	65																	←	←	←	←	←	←	←	←	←	←	←	←	←

- ()내 숫자는 부산지역 인상시점 ① 수입차 또는 2,500cc 이상의 국산승용차, ② 외산차중 자가용승용차는 국산차에 준함 (배기량기준) ③ '97.10.28일부터 국산차에 준함 (배기량기준)
- 경상용차(버스, 화물)는 '97.7월부터 소형상용차대비 50% 낮은 금액의 공채를 매입
- '04.7월부터 소형자동차세 기준변경 : 1,500cc → 1,600cc
- '지프형'을 '다목적형'으로 변경('07.10)
- '09.7월부터 하이브리드승용차(7인 미만) 공채 매입시 200만원 매입의무 면제

나. 이전등록

(단위 : 천원)

구 분		적용대상지역	'85		'87		'90. 9(10)		'94.1		'96.1		'98.1		'04.7		'06.1		'07.10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승용차	외산차	수입차(2,500cc이상)	전 지역	①995	330	←	←	←	←	②995	③330	②995	③330	-	-	-	-	-	-	-	-											
	고급차	2,000cc 이상	도시철도채권지역	435	145	4%	3%	6%	3%			6%	3%																			
			지역개발공채지역	↑	↑	435	145	435	145			6%	1%									←	←	←								
	일반차	1,500cc 이상	도시철도채권지역	305	100	4%	3%	6%	3%	←	←	6%	3%	←	←	←	←	←	←	←	←											
			지역개발공채지역	↑	↑	305	100	305	100			4%	1%									←	←	←								
		도시철도채권지역	110	35	4%	3%	6%	3%	6%			3%	←									←	←									
		지역개발공채지역	↑	↑	110	35	110	35	3%			1%	←									←	←									
	다목적형	4륜 구동	도시철도채권지역	85	30	4%	3%	6%	3%	←	←	6%	3%	←	←	←	←	←	←	←	←											
			지역개발공채지역	↑	↑	85	30	85	30			1.5%	1%									←	←	←								
	버스	대형	25인승 이상	전 지역	435	145	←	←	←	←	←	←	←	←	←	←	←	←	←	←	←	←										
중형		16~25인승	전 지역	215	70	←																	←	←	←	←	←	←	←	←	←	←
소형		7~15인승	전 지역	130	45	←																	←	←	←	←	←	←	←	←	←	←
화물	대형	4.6톤 이상	전 지역	215	70	←	←	←	←	←	←	←	←	←	←	←	←	←	←	←	←											
	중형	2.5~4.6톤	전 지역	130	45																	←	←	←	←	←	←	←	←	←	←	
	소형	2.5톤 미만	전 지역	65	20																	←	←	←	←	←	←	←	←	←	←	←

- ()내 숫자는 부산지역 인상시점 ① 수입차 또는 2,500cc 이상의 국산승용차, ② 외산차중 자가용승용차는 국산차에 준함 (배기량기준) ③ '97.10.28일부터 국산차에 준함 (배기량기준)
- 경상용차(버스, 화물)는 '97.7월부터 소형상용차대비 50% 낮은 금액의 공채를 매입
- '04.7월부터 소형자동차세 기준변경 : 1,500cc → 1,600cc
- '07.10월부터 경차면제기준 확대(800cc → 1,000cc미만)
- '09.7월부터 하이브리드승용차(7인 미만) 공채 매입시 200만원 매입의무 면제
- '지프형'을 '다목적형'으로 변경('07.10)

6. 면허세 (지방세법 제164조)

(단위 : 원)

구 분		'77. 1			'91.1 ~ '00.12			'01.1 ~ 현재		
		인구50만 이상시	기타 시	군	인구50만 이상시	기타 시	군	인구50만 이상시	기타 시	군
1종	3,000cc 이상 승용자동차	27,000	18,000	10,800	45,000	30,000	18,000	면허세 폐지		
2종	1,600cc 이상 승용자동차	21,600	13,500	7,200	36,000	22,500	12,000			
3종	1,400cc 이상 승용자동차	16,200	9,000	4,800	27,000	15,000	8,000			
4종	1,400cc 미만 승용자동차, 자기용화물차, 승합차, 영업용자동차, 개인택시	10,800	6,000	3,600	18,000	10,000	6,000			
5종	경차	7,200	3,000	1,800	12,000	5,000	3,000			

- 연간세액 (매년 납부)
- 구분은 '97.10.1일 개정

● 자동차 관련세금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세 목	'05	'06	'07	'08	'09 (추정)
구매단계	개 별 소 비 세	6,811	9,022	8,811	9,891	9,099
	교 육 세	2,043	2,707	2,643	2,967	2,730
	부 가 가 치 세	24,078	26,409	28,079	26,896	32,655
	소 계	32,932	38,138	39,533	39,754	44,483
	비 중	12.7	14.2	13.2	12.8	13.9
등록단계	등 록 세 *	10,793	12,998	14,576	14,262	16,447
	취 득 세 *	5,490	6,190	6,828	6,540	7,099
	소 계	16,283	19,188	21,404	20,803	23,545
	비 중	6.3	7.2	7.1	6.7	7.3
보유단계	자 동 차 세 *	19,021	21,338	23,699	26,109	27,613
	교 육 세 *	6,016	6,801	7,499	7,427	7,855
	소 계	25,037	28,139	31,198	33,536	35,468
	비 중	9.6	10.5	10.4	10.8	11.0
운영단계	유류개별소비세	111,997	103,573	121,726	124,793	123,991
	(교통·에너지·환경세)	(102,878)	(95,938)	(114,635)	(119,093)	(111,518)
	교 육 세	16,800	15,536	18,258	18,719	18,599
	주 행 세 *	22,925	27,095	32,702	30,812	30,853
	유 류 부 가 세	33,906	36,145	35,553	43,133	44,729
	소 계	185,627	182,349	208,239	217,457	218,172
	비 중	71.4	68.1	69.3	69.8	67.8
자동차 관련세 총계 (A)		259,879	267,814	300,375	311,550	321,668
국세·지방세 총계 (B)		1,564,011	1,715,546	1,965,871	2,030,083	2,030,978
총 세수중 비중 (A/B)		16.6	15.6	15.3	15.3	15.8

• 자료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 주 : 1.*는 지방세

2. 법령 변경 : 교통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07. 1), 특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08. 1)

● 주요국 자동차 관련세제

구분	미 국	일 본
취득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에 따라 판매가격의 0~10% • 소비세(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톤 초과 트럭, 13톤 초과 트레일러 가격의 12% • 연료보존세(Gas Guzzler)(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비가 갤런당 22.5마일(9.6km) 이하 차량에 1,000~7,700\$까지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 판매가격의 5.0% • 취득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 : 취득가격의 5.0% - 영업용, 경자동차 : 취득가격의 3.0% <p>※ 500,000¥ 이하 취득세 면제</p>
보유·이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은 주에 따라 차이 • 중량자동차 이용세(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000lbs 이상 화물차 대상 - 기본\$100+55,000lbs 초과 1,000lbs당 \$22 • 안전배출가스 검사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별 차종별 차이 - \$4.50~\$62.25 • 기타 타이어세(연), 운송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중량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중량 0.5톤당) ¥6,300 - 트럭(중량 1톤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톤 초과 ¥6,300 2.5톤 이하 ¥4,400 - 버스(중량 1톤당) ¥6,300 - 경자동차(정액) ¥4,400 • 자동차세(지) : 배기량별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cc 이하 ¥29,500 - 1,001cc~1,500cc ¥34,500 ∴ - 6,001cc 초과 ¥111,000 • 경자동차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7,200 - 트럭 ¥4,000
	연료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소비세(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0.18, 디젤 \$0.24(갤런당) • 연료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에 따라 차이
구분	이 탈 리 아	스 페 인
취득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가격의 20% • 등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ic Tax € 100 - € 150.81(53kw이하 승용차), € 3.5119/kw(53kw초과 승용차) - 각 지방정부가 연료별, CO₂ 배출량별 최대 30%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가격의 16% • 등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ic Tax € 90 - 120g/km 이하 0%, 121~159g/km 4.75% 160~199g/km 9.75%, 200 이상g/km 14.75%
보유·이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력(kw), 배출가스 기준 과세 - Euro 4.5 승용차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kw 미만 € 2.32~€ 2.84/kw 100kw 초과 € 3.48~€ 4.26/k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 출력(HP)에 따른 과세(최소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8HP 미만 € 12.62 8HP 이상 12HP 미만 € 34.08 12HP 이상 16HP 미만 € 71.94 16HP 이상 20HP 미만 € 89.61 20HP 이상 € 112.00 - 버스 : 승차인원에 따른 과세(최소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인승 미만 € 83.30 21인승 이상 50인승 이하 € 118.64 50인승 초과 € 148.30
	연료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휘발유 56.2센트/ℓ - 경유 42.1센트/ℓ • 연료부가세(국) : 판매가격의 20%

구 분	프 랑 스	중 국
취득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제외한 판매가격의 19.6% • 등록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ic tax € 20~46 - 1km 주행시 배출 CO₂ 기준 〈보너스〉 60g 이하 € 5,000, 61~95g € 1,000, 96~115g € 700, 116~125g € 200 〈페널티〉 156~160g € 200, 161~195g € 750, 196~245g € 1,600, 246g 초과 € 2,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MPV, SUV 1.5ℓ 이하 3% 1.5ℓ 초과 2.0ℓ 이하 5% 2.0ℓ 초과 2.5ℓ 이하 9% 2.5ℓ 초과 3.0ℓ 이하 12% 3.0ℓ 초과 4.0ℓ 이하 15% 4.0ℓ 초과 20% - 버스 및 코치(7m 이상) 5% • 자동차취득세 10% ※ '10.1.1~12.31 배기량1.6ℓ 이하 승용차 7.5%로 인하
보유·이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승용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CO₂ 배출량 245g/km 초과 신규등록차는 연간 € 160 • 법인승용차세(CO₂/km 배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g/km이하 € 2/g - 101~120g/km € 4/g - 121~140g/km € 5/g - 141~160g/km € 10/g - 161~200g/km € 15/g - 201~250g/km € 17/g - 251g/km 이상 € 19/g • 차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톤 초과차량에 대해 차축유형에 따라 분기당 € 31~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RMB60~660 - 대형버스(20인승 이상) RMB480~660 - 중형버스(9~20인승 미만) RMB420~660 - 소형버스(9인승 미만) RMB360~660 - 경버스(1ℓ 미만) RMB60~480 - 트럭(톤당) RMB16~ 120 - 3륜차, 저속트럭(톤당) RMB24~120
연료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휘발유 60.6센트 /ℓ - 경유 42.8센트 /ℓ • 연료부가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제외한 판매가격의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연료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RMB 1 /ℓ - 경유 RMB 0.8 /ℓ

구 분	영 국	독 일
취득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가격의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가격의 19% • 등록세 € 26.30
보유·이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 CO₂ 배출량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g/km 미만 £0 - 101~110g/km : £20 - 111~120g/km : £30 - 121~130g/km : £90 - 131~140g/km : £110 - 141~150g/km : £125 - 151~165g/km : £155 - 166~175g/km : £180 - 176~185g/km : £200 - 186~200g/km : £235 - 201~225g/km : £245 - 226~255g/km : £425 - 256g/km 이상 : £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ic Tax € 2/100cc (휘발유) € 9.5/100cc (경유) - 1km 주행시 배출 CO₂ 기준 : € 2g/km - 120g/km 미만 면제 (110g/km 2012/13년, 95g/km 2014년이후)
연료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휘발유 66.1센트 /ℓ - 경유 66.1센트 /ℓ • 연료부가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가격의 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65.5센트 /ℓ - 경유 47센트 /ℓ • 연료부가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가격의 19%

• 세목구분 : (국)-국세, (지)-지방세, (연)-연방세, (주)-주세

• 자료 : IRF World Road Statistics, ACEA 2009 TAX GUIDE, CAAM Automotive Industry of China